

第215回國會
(定期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0月9日(月)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2. 금융지주회사법안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법률안
4.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5.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6. 外國換去來法中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 | | |
|----------------------------------|---|
| 1.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 |
| 2. 금융지주회사법안(정부제출) | 5 |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법률안(정부제출) | 5 |
| 4.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5 |
| 5.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5 |
| 6. 外國換去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5 |

(10시44분 개의)

○**委員長 朴憲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국회 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文濟豊**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朴憲基** 2000년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보고 말씀 들으신 대로 그동안 수고하신 金武星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李柱榮 위원이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李柱榮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榮委員**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출신 국회의원 李柱榮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형

편상 金武星 위원과 교체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 또 동료 위원님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법사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과 지난번 사무처 인사에서 우리 위원회로 발령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검사입니다.

정환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인사)

1.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0시48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金浩鎭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최저임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容鈞委員** 네.

○**委員長 朴憲基** 金容鈞 委員님 질의하시지요.

○**金容鈞委員**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문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법상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가구당 93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월급 42만 1490원 수준인데 이렇게 하고 과연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3D업종 등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차라리 조금 적게 받고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경우 실제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그 실효성

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최저임금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이 부처는 다르나 결국 노동부 소관업무와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최저생계비 지급과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 법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의 의견이 밝혀진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앞서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委員長 朴憲基** 예, 말씀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해서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라든가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달리 말하면 근로자 1인의 생계비 또 근로자 1인의 노동생산성 이것이 산출근거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최저생계비 산출근거는 그야말로 지원금은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전자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후자는 가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액수도 1인 가구로부터 6인 가구까지 다 차이가 나 있습니다. 1인 가구 경우는 32만 원이고 흔히 인용되는 4인 가구 경우는 92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최저임금은 42만 1190원입니다마는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인 가구 32만 원에 비하면 높은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 돈을 받고서 일을 했을 적에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하는 그 수준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의 보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 봐야 돈이 적다, 그래서 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산출을 할 경우에도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타 부처와의 정책조율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金容鈞委員**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대단히 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데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과 가구당 임금의 형식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실에 안

주하는 듯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는 4인 가구의 경우에 그 최저임금이, 제가 정확한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1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42만 1490원을 그 집에서 가장이 받아 갔을 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얼마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 과연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보장이 되는 것인지 그 숫자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일단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등을 합하면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은 42만 2000원보다 훨씬 높은 액수가 됩니다.

99년도의 경우 통상임금에 거의 준하는 정액기준이 대개 69.7%인데 최저임금 총액으로 하면 약 60만 원선을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합산하면 42만 2000원 수준이 훨씬 넘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액수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면서 소득공제를 15% 정도 해 주게 돼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액수와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액수는 더 커집니다. 달리 말하면 소득공제 부분을 해서 그 공제분만큼 더 받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그런 인센티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鉛熙委員**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委員님 질의하시지요.

○**崔鉛熙委員** 최저임금법 시행일자를 의결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의결된다 해도 지금까지 5인 이상 근로자 내지 사업장에 적용하던 것을 1인을 고용하더라도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요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사업운영 여건이 나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물론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이 정도는 최소로 보장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봐서 과연 1개월 이내에 준비가 다 되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전준비도 없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에 그 법집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파생문제들이 많

습니다. 그런데 1개월 준비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 법의 개정취지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저희 노동부로서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착오라든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 좋은 충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입법이 발표가 되고 약 1개월 정도 사업주에게 인지를 시키면 이 사업장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우리 노동부로서의 그동안의 행정경험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달로 정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 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 적용 대상업체가 통계적으로 거의 파악이 되어 있고 각 지방에 노동행정사무소가 다 설치됐기 때문에 행정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어 1개월로 했습니다.

○**崔鉛熙委員** 자신합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행정 인프라를 통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빨리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당초는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월이 지나니까 공포 후에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예상하는 기간보다 시행기간이 짧아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사이에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부에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예상을 빚나가는 일도 있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법을 제정·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정말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이 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적용되는 대상자가 약 133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약 4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4만 3000명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99년도 영세규모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면 전혀 차질이 없다는 확신이 서서 저희들이 1개월로 정했습니다.

○**崔鎔熙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宋永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宋永吉委員** 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장관님께서서는 최저임금법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산업연수생 여러 가지……

일단 근로자에게는 다 적용이 됩니다.

○**宋永吉委員** 대충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실금액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약 70만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조사를 마쳤는데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약 7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대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宋永吉委員** 그 기준이 넘는다는 건데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물론 야간근로수당 등 제반 수당을 합해서 총액 개념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勞動部長官 金浩鎭**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상이 다 되고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李柱榮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柱榮委員** 오늘 개정안으로 돌아온 그 법안의 핵심내용은 적용범위를 당초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던 것을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그 핵심요지인데 지금 단서에 보면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家事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용제외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네,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네.

○**李柱榮委員**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

한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많이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嫡出이 아닌, 자기의 친자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적출이 아닌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적출이라 하더라도 아동을 흡사하는 그런 인권 사각지대가 많다, 또 가사사용인인 경우에도…… 이것은 소위 가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가정부입니다.

○**李柱榮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노예노동에 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노동인권 보장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관행 변화에 따라서 적용배제 범위, 달리 말하면 가족끼리 하는, 친족이 하는 그런 사업장,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재검토할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에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 주시게 되고 저희 노동부에서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항을 최저임금법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리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배제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동거의 친족이 하는 사업체의 경우 그것을 사용자로서 어떤 사용자·고용 종속관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가족 생활공동체 비슷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논의가 외국에서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배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가사노동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정부의 경우 이것을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로 보기가 참 애매한 점도 많고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경우 근로감독을 우리가 할 경우,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각 가정의 가정부 관계를 최저임금을 지키느냐 아니냐 조사한다는 것이 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법리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에서도 배제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 최저임금법에서도 이것을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柱榮委員 다른 여러 가지 근로기준에 관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현실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아직 개정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여러 가지 고용 형태의 변화라든가 우리의 법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이 동거의 친족이라든가 가사사용인의 어떤 인권보장, 노동인권 보장적인 차원에는 이것을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라도 좀 전향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모순되는 그런 적용은 사실 저희들이 법리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委員長 朴憲基 장관님, 시간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 감정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잘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기초생활보장법하고 최저임금법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잘 연구 검토를 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柱榮委員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감사합니다.

2. 금융지주회사법안(정부제출)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4.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5.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6. 外國換去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1시15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안, 의사일정 제3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陳 稔 재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들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금융관련 법안의 제출 배경과 관련해서 지난 2년간 저희 금융기관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실을 털어냄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중개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형화를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향상을 기하고 겸업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채권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법안의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될 당면과제인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방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어음거래제도의 개선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최근 국제금융질서 개편을 위한 논의와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 경제여건에 맞게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예외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기업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코자 합니다.

셋째로 금융지주회사 본체에서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회사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허용하되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에 신용공여 제한 등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3년이 되어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잔여주식을 그다음 1년 이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설립하며,

둘째로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다수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명목회사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 주요업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 등의 매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 업무 등입니다.

넷째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의 2배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운용업무는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되 자산보관업무 및 일반사무를 각각 자산보관회사와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당초 6년으로 하려던 것을 5년으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신탁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현재는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분할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 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약속어음 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0.5%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증권투자신탁회사 신탁저축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출자자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아원 양로원 등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불우이웃결연사업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기부금 및 사립학교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범위를 당초 연간 180만 원으로 하려던 것을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헤지펀드 등 비거주자가 원화조달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주자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

외화차입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둘째, 외환시장의 안정 및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해서 대외채권 회수제도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본거래 허가제에 대한 연장시한을 외국으로의 자본유출 등을 걱정하여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등 내용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5개 법률안에 대하여 기본취지와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법률안의 제·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금융지주회사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관한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쪽,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융전업자가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금융전업자의 주식보유한도는 의결권 제한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금융전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여 이 점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제48쪽,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인가요건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관의 기재여부만을 인가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실제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유인물 71쪽, 안 제47조제2항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은 상호에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80쪽, 안 제64조제2항에서는 과징금부과의 요건으로 위반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함은 다수의 범위반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처분을 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상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법례 또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유인물 84쪽, 안 제7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신고사항과 승인사항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승인사항은 그 경중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위반행위 또한 다르게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87쪽 및 88쪽, 안 부칙 제3조에서 기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기 설립된 회사가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되 2대 주주 이하로 되는 것만을 허용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법문의 표현으로 볼 때 마치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그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듯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 및 49쪽, 법률안 제명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방식은 기존의 각종 공사, 공단 또는 회사설립법상의 입법례와도 맞지 아니하고 또한 이 법률안이 특정회사의 설립법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인 것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2쪽, 안 제2조제8호다목에서는 약정채결자산의 범위에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외에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가 신규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약정채결자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항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인바 동 조항에서 약정채결자산은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신규로 취득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4쪽,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창립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인만이 주식을 인수하고 일반주주를 모집하지 않는 발기설립방식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상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발기설립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의 종료 후 2주 내에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9쪽, 안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감사 또는 업무수탁회사에 대하여 각종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이사의 구성을 일반 업무집행이사와 감독이사로 이원화하고 있는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사의 구성을 일원화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66쪽, 안 제26조제1항에서는 이사가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승인대상은 결산서류이고 감사보고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고, 유인물 86쪽,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효기간의 종료 후 벌칙적용에 대한 경과조치가 결여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또 동 제3항에서는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약정채결기업의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맞게 조정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 안 제119조제6항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조건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한 등록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설립등기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쪽, 안 제52조제3항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괄호 안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주’를 포함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부분은 괄호 밖의 표현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거주자에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은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및 17쪽, 안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외국환거래법상의 일부 규제조항에 대하여 금년 말을 적용시한으로 그 규제를 풀려고 하였으나 정책을 변경하여 일부규제에 대해서는 그 시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일부규제는 계속 존치하며 제15조 및 제18조의 일부규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규제대상에서 풀겠다는 것인데 제18조의 관련규제는 명시적으로 삭제조치를 하면서 제15조의 관련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舜衡委員 예.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저축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것이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趙舜衡委員 그래서 재경위에서 수정안 내서 되었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趙舜衡委員 그런데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재경위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재경위 수정안을 받아들여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趙舜衡委員 아니, 적어도 조세특례법을 마련하면 재경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 없던 것을 재경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고 해서 그냥 찬성했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아니지요. 저희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사항을 따져가지고……

○趙舜衡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농어촌특별세 면제한다는 것은 원안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趙舜衡委員 이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저축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가입합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약 7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본론으로 모든 법률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될 때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金泳三 정부 때 아주 피폐해진 농어촌을 바로 다시 일으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예.

○趙舜衡委員 그리고 나는 세법도 잘 모르지만 잠깐 보니까 이제까지 조세가 감면된 분에 대해서 이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특례제한법에서 신탁저축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어촌특별세가 농어촌구조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 입법취지인데 그것을 자꾸 예외로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의지가 그렇고 우리 입법자의 의지가 그렇다면 당연히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부분적으로 농어촌특별세법에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것, 이것 하나 빼고 한참 있다가 또 청원

들어오고 무슨 얘기 있으면 또 빼고, 그러면 결국 농어촌특별세법은 사문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원안에도 없었는데 재정위에서 이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면 재정위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을 따로 개정안을 정부가 내든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15대 국회 재정위에서 이것도 정부원안에도 없던 것인데 청원을 받아들이고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또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법안이 우리 법사위에 회부되어서 그것이 보류가 되어서 결국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15대 국회에서 그런 전례를 보았는데 우선 법체계상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우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빼 나가면 이 재원조달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세제실장입니다.

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또 하나 있으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에 보니까 60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법조항이 죽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법안 처음 봅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처음 봅니다.

그런데 법원이 하던 것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검사가 하는 것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상법에서는 법원과 검사가 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그 기업의 감독이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법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대체하고 검사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대체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둘째, 61조의 권한의 위탁을 보면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의로 그것도 ‘일부’라고 했는데 그 일부는 뭘니까?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위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자체가 변칙이고 법체계상 문란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을 또 위탁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특별세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금이 감면될 때 그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특별히 과세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법을 입안할 때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1조 5000억씩 해서 15조 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세원 중에서 증권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로 인해서 그 세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9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평균 예산액 1조 5000억보다 5000억을 초과한 2조 234억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1조 400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보면 2조 2000억 가량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농어촌특별세가 예상보다 크게 초과징수되고 있으니까 기왕에 농어민이라든가 생계형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시급한 투자신탁 비과세 부분도 금년 연말까지만 가입하는 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농어촌특별세로 하지 말고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함께 비과세하도록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어촌특별세법을 고치는 것이 정도이겠습니다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세법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가지고 다른 세법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고 운영한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趙舜衡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했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趙舜衡委員** 농림부는 뭐라고 해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농림부에서는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재원이 정상 규모부터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니다.

○**趙舜衡委員**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니까?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위원님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정위원님께서 결정하시면 농림부로서는 이견이 없다고……

○**趙舜衡委員** 증권거래세가 많이 견혀지기 때문에 면제해 주어도 괜찮다는 판단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안 하고 있다가 재정위에서 비로소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합니까? 아니, 증권거래세가 많이 견히고 있는 것을 재정위원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좀 많이 견히면 어때요? 꼭 모자라야 됩니까? 많이 견히면 많이 견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이 견힌다고 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어촌이 피폐해서 농어민들의 원성이 큰데……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입법은 아주 특별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댈 때에는 반드시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지금 말씀한 그런 얘기가 정부 측에서 ‘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많이 견히니까 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그때그때 여기저기에서 이러니까 면제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 제정될 때에는 아주 좋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정부가 일관성을 안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법이 전부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왜 재정부에서는 많이 견힌다는 것을 이유로 댁니까? 원안에 없으면 소신 있게 ‘그것은 따로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또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왜 당초에 없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당화시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趙舜衡**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루어진 하나의 관행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하고 내용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趙舜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여부를 관계부처와 분명히 협의를 하고 법사위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고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이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과거에 관행도 이렇게 했고……

○**趙舜衡委員** 그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 내가 전임 농림부장관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안 견혀서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농어촌특별세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나니까 줄이자는 얘기보다도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추정을 할 때 재정위원들한테 그것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재정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委員** 정말 많이 견히고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법의 면제보험률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대로 따로 하세요. 여기저기서 청원하고 로비하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을 알면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처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10년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거창한 사업인데 재경부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재경부장관이 부총리 되셨잖아요. 부총리를 부활시킨 취지가 뭐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명심하겠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리고 또 하나 답변하세요.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재정부 금융정책국장입니다.

趙舜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회사가 금융기관

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와 법제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법원으로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금감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감위로 고친 것이고, 두 번째로 권한의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기계적이고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업무라든지 등기의 촉탁업무라든지 그러한 것을 대통령령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법제처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예, 법무부나 법제처하고 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면 권한위임은 아까 말한 대로 경미한 것인데 경미한 것이면 법에 그렇게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경미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이 한다고 처음부터 법으로 범위를 정리해서 해놓으면 되지 그것을 대통령령에다 위임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일부’라는 것이 뭐예요? 어디까지가 일부예요?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일부라는 것이 등록업무 그리고 등기의 촉탁업무 이러한 정도로 한정해서 일부에 국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만 해도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전부는 위임 못 하지만 일부는 위임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에다가……

○趙舜衡委員 지금 답변이 어디 법문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법문 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법체계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재정부에도 법무관이 있습니까?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예,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지금 여기 출석하고 있어요?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趙舜衡委員 법무관이 왜 안 나오니까?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李永檜 행정하고 법무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趙舜衡委員 각 부처의 법무관이 법 제정·개정의 심의를 하는 실무자인데 왜 행정을 또 맡고 있습니까? 이것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됩니다. 정책판단은 물론 실·국장들이 다 하지만 법체계에는 맞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재정부에서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니까 법체계는 생각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요. 그저 효율성으로 경제개혁을 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재 정부가 특히 그래요. 그리고 재 정부가 우리 정부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센 부처라고 할까 이래 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씩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부처는 아주 성실한데 그 문제에 있어서…… 재 정부는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얘기했는데도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陳 稔 장관이 취임하셔서 바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적절히 처리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憲基 金容鈞 위원 질의하시지요.

○金容鈞委員 현재 상정된 5개 법안이 우리나라의 금융 내지 경제정책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5개 법안이 일괄상정되어 가지고 주마간산격으로 넘어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우려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 법이 경영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강제로 금융기관의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대형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중앙집중식의 무리한 간섭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하는 데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높이고 금융의 부실화를 역설적으로 초래한 경우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되면 결국 금융감독원, 재정부 그리고 공정경쟁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입할 것인데 현재도 각 금융기관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은 정

부기구들이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개선 소위 말하는 워크아웃 작업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이 현재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인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이 현재 여러 가지로 기업 퇴출기준을 정한 선 이하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는 부실기업도 적용대상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이라든지 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회사 등의 경영실적이나 경영실패에 대한 문책을 하거나 또 그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관할인데 현재 금융거래 및 자금 이동 등에 있어서 각종 사고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세감면을 위한 각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증권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저축 신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기관들이 펀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이전에 각 증권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저축 가입자와 가입금액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 제 개정상의 차질 등이 있을 때, 그래서 적용시점이 달라질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재발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를 하고 대학원교육비 공제,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직접세인 소득세 세액공제 상향보다는 조세제도상 문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재산세나 소득세 등의 직접세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은 종래에 자유화되었던 외환거래조치 일부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환거래자유화조치는 98년 6월에 정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것인데 그 당시의 금융시장 환경과 또 국내 외환거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할 경우 자유화조치 일부를 제한해야 될 중대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헤지펀드 등 국내 환투기시장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단기외국자본 등이 일시에 빠져 나간다는 가정을 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시스템 및 자본거래시장을 볼 때 투기성거래, 과도한 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그 감시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기관 강제통합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드린 금융지주회사법은 우량은행이든 우량하지 않은 은행이든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우량은행도 몇 개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변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이나 보험, 증권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는 메리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간 은행으로서 홀로 살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은행, 이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만, 이런 은행에 대해서는 가령 공적자금 투입된 것을 회수해야 한

다는 측면에서나 그런 은행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강제적인 통합 특히 우량은행을 강제적으로 통합해서 국민재산을 침해할 우려는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적자금투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간섭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운영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초기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때문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별 금융기관별 건전성 감독에 전문화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금융기관의 경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구조조정회사와 관련해서 현재의 워크아웃 기업 내지는 앞으로의 워크아웃 기업도 대상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생사를 판단짓고 좀더 도와주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자연 조기퇴출하도록 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저희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정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행단에서 워크아웃 기업은 별도로 떼어서 경영 전문팀들이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예를 들어서 기술 면에서나 시장 면에서나 자금관리 면에서나 살릴 수 있는 기업이나,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조기에 판정하도록 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이것은 해도 안 되겠다 하는 곳은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선순환적인 업무의

정당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금융사고가 자주 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행별로 특히 앞서가는 은행들은 엄청난 글로벌, 선진 형태의 관리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은행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은행들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은행의 경우에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러한 것을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하고 동시에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 박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시스템 정립과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쪽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증권회사의 비과세상품을 법률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4일 재경위에서 금융시장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비과세 신탁저축상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동 비과세상품을 국회 의결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비과세신탁저축은 법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경위 수정내용은 부칙에서 “법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고 또 임시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해서 기존의 저축상품을 예약한 가입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자금시장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조건하에서 동 저축상품의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일 현재 비과세저축신탁상품의 수탁고는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직접세에서 자꾸 경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세

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또 재산세와 직접세의 부담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오늘 설명드린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감면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재산세와 특히 불로소득, 과소비에 대한 국세행정을 강화함으로써 해서 연간 약 2조 5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도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다소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를 고치는 것은 세수 기반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하여 위원님이 양면성의 두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화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물음과 또 한쪽에서는 특히 요즘 잘못하면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자본유출이 될 때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IMF와의 협약사항입니다. 다만 경상거래에서 일부 적용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재정경제부에서 늦추어 온 것은 내년이 여러 가지로 걸쳐 있습니다.

금년 종합과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하고 또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다시 도입해야 되는 상태에서 경상거래를 함부로 풀어 버리면 잘못하면 우리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외국환거래 자유화의 기본 정신은 살리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경상거래의 해외유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세청 통보제,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거래 1만 불 이상의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금융거래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작업이 다 끝나서 이것에 관련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히 해아려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최소화되고 저희가 추구하는 효과는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委員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지주회사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이중과세는 100% 안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崔鉛熙委員 어떻게?

○財政經濟院稅制室長 金振杓 세제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과세되면 존립기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에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는 전액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배제장치를 도입했습니다.

○崔鉛熙委員 100% 안 될 경우에는?

○財政經濟院稅制室長 金振杓 그것은 지분비율에 따라서 차등공제되도록 했습니다.

○崔鉛熙委員 결국 이중으로 과세를 하기는 하네요. 비율만 차등을 두었을 뿐이고……

○財政經濟院稅制室長 金振杓 그동안 저희 나라에서는 법인 외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없었는데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에 관해서 처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 내놓은 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처럼 100% 자회사 지분을 갖는 경우에는 100%를 다해 주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서 8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0%를 공제하고 30%에서 80% 사이의 경우에는 60%를 공제하는 장치를 도입했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절반 정도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정기국회에 법인세법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財政經濟部租稅室長 金振杓 예,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현재 그 법안이 재경위에 있습니까?

○**財政經濟部租稅室長 金振杓** 저희가 그 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마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재경위원회로……

○**崔鉛熙委員** 아직 상정 안 되었군요?

○**財政經濟部租稅室長 金振杓** 예.

○**崔鉛熙委員** 대개 금융지주회사법이 구조조정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 이것이 우량은행 간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는데 외국 입법례는 대개 우량 금융기관 간에 그것이 가능한데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 우량 금융기관뿐만 아니고 불량 금융기관 사이에도 할 수 있다, 또 우량 금융기관과 불량 금융기관 간에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 입법례에서는 우량 금융기관 상호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금융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예는 없습니다.

○**崔鉛熙委員** 아니, 외국의 실제 예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외국의 실제 운영은 대체로 우량 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는 불량 금융기관 간에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財政經濟部金融政策局長 李鍾九**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의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와 같은 불량은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노사간 파업관계로 협의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량은행과 우량은행을 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이루션(dilution)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불량은행에도 충분히 공적자금을 넣어서 은행을 현재는 불량은행이지만 앞으로 클린화한 후에 지주회사에 편입시켜서 지주회사 산하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일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고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다만 현재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은행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실채권을 떼고 거기에 공적자금을 넣어서 좀 우량은행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등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 놓되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곳은 공적자금을 최대한으로 회수해야 할 책임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클린화시키고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지주회사로 끌어들었을 때 공적자금 회수가 더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주회사를 활용할 방안도 저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崔鉛熙委員** 그것이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공적자금을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지 우량은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번 퇴출은행들에 관해서 은행들의 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정부로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관련자들, 경제계 인사들은 불공정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결국 은행 간의 구조조정 문제는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합니까? 정부에서 다 관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말씀은 그리 하지만 정부에서 손을 대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까 제기되어서 이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취지에 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법인세법개정안은 정기회에 제출됐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成承熙委員** 빨리 하자는 취지인데 무조건 빨리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법들이 한꺼번에 5개씩 제출됨으로써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법사위 소관이 기본적으로는 자구수정이나 법체제 간의 모순, 체제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 내지는 지금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들면

저희 소관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권한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이나 또는 체제 모순 같은 것을 지적하는 범위 내로 의사진행을 조정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제로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다른 날 미리 날을 잡아서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당 부처로 하여금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容鈞委員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咸承熙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법사위원회가 현재 체제 및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 및 자구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어떤 체제라든가 자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단지 또 헌법에 위반되는 면이 없느냐라든지 또 억울하게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되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회가 아니고는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崔鉛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이중과세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알았습니다.

趙舜衡 위원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비과세되는 농특세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알았습니다.

趙舜衡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까마는 농어촌특별세 자체가 조세를 감면해 주는 그 감면액의 일정 범위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면받고 이것도 없애고 한다는 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의견이고, 15대 국회에서 이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법안이 사실 우리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때는 아

마 재정부에서 우리 세제실장도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폐기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떻습니까? 장관님이 앞으로 농어촌특별세의 입법취지를 좀더 충실히 지켜 주시고 또 농어촌특별세의 세원 확충에 오히려 더 감면 이런 건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어때요. 趙舜衡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趙舜衡委員 약속이야 뭐 잘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지키느냐가 문제지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아니,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趙舜衡委員 아까 그 200억이라는 말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걸혀서 지금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崔鉛熙委員 여당에서 못 믿으면 누가 믿어요?

○趙舜衡委員 아까 농어촌특별세도 이 정도 걸히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걸혀 가지고 면제해도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朴憲基 趙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委員 예, 그대로 실천만 하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趙 위원님, 제가 새로 와서 약속을 드리는 거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憲基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出席委員

金容鈞	金學元	朴憲基	裴基善
宋永吉	尹景湜	李源性	李柱榮
張在植	鄭寅鳳	趙舜衡	千正培
崔炳國	崔鉛熙	咸承熙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會瑄

전 문 위 원 金 鍾 斗
 전 문 위 원 安 秉 玉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 官 金 浩 鎭
 기 획 관 리 실 장 文 亨 男
 근 로 기 준 국 장 鄭 秉 錫

재정경제부

장 官 陳 稔
 차 官 李 晶 載
 기 획 관 리 실 장 李 永 檜
 세 제 실 장 金 振 杓
 금 융 정 책 국 장 李 鍾 九
 국 제 금 융 국 장 金 容 德
 세 제 총 괄 심 의 관 崔 庚 洙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법제사법	金武星	李柱榮	한나라당

(9월21일자)

○議案回附

刑의失效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 표발의)

(9월19일 김홍신·이부영·김태홍·김영춘·김근태
 ·이미경·장영달·안영근·김영환·이성현·이재오
 ·김문수·심재철·설 훈·김부겸·이호용·김성호
 ·원희룡·권오을·김찬우·서상섭 의원 발의)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9월21일 강재섭·강신성일·고홍길·권오을·김방
 립·김부겸·김원웅·배기운·이상배·이인기·이원
 형·이해봉·조응규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2건 9월21일자 회부

戶籍法中改正法律案

(9월7일 정부 제출)

9월7일자 회부

○請願回附

여수지원및여수지청설치에관한청원외4건

(金忠兆 의원 등 9인 소개)

7월26일 이후 각각 회부